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문

일시: 11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어떤 사람은 '천도(天道)는 공평 무사하여 언제나 착한 사람의 편을 든다' 고 말했다. 그런데, 행실이 궤도에서 벗어나고 잔혹한 짓을 태연히 자행하는 악인은 죽을 때까지 즐기고, 그 자손들은 많은 유산으로 몇 대나 안락하게 살고 있는 예는 근세에 수없이 이어진다. 그것에 비하여 바르지 않은 일을 아주 싫어하고 옳곧게 대도를 걸어나갔던 인물들이 비운의 죽음을 맞은 예는 수없이 많다. 그래서 나는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 백이열전伯夷列傳 중에서

1.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국가배상 책임

전두환은 5.18 진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Gwangju Uprising) 혹은 광주민중항쟁(光州民衆抗爭)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및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시 광주시민은 신군부 세력이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실행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인해 발생한 헌정 파괴·민주화 역행에 항거했으며, 신군부는 사전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전두환 등 내란죄 수괴들에 대한 형사재판(대법원 1997.4.17.선고 96도3376판결)에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면서,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하였다면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에 맞서 투쟁한 것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전두환 및 군인 등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은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인바,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입니다.

2. 헌법재판소의 재판상화해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5.18 피해자들은 과거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7. 1.13.법률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등에 의하여 당시 노동능력 상실 정도 및 급여 등에 따른 일정한 생활지원 및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였고, 더 더욱 당시 제16조 제2항에 의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5.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7. 1.13.법률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헌법재판소 2021.5.27.선고 2019헌가17전원재판부 결정)바 있고, 대법원 또한 지난 7.29.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2021.7.29.선고 2016다259363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5.18보상법의 재판상 화해규정은 정신적 손해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자료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피해자 본인, 또는 유가족들이 굳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①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 내란음모', '불순분자들의 책동', '폭도들의 무장난동'이라고 5.18을 폄하, 왜곡, 낙인찍는가 하면, 심지어 '원흉'이라고 지목받는 전두환은 5.18의 진실을 부인하고 있고, 일부 보수세력들은 북한이 파견한 특수공작원들이 선동한 사건이라고 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별개로 피해자 개개인 및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법적 진실과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② 피해자 개개인이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은 '자신의 팔자'이거나 '못난, 배우지 못한 잘못'이 아니라 전두환 정권의 정권 안정화를 위한 공포정치 내지 12.12 이후 정권장악을 위한 희생양이었음을 폭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어떻든 당시 헌정문란 행위의 정점에 있었던 전두환[2]은 아직까지도 5.18 민주화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는 커녕 자위권 발동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5.18의 진실을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군인 또는 전두환 등 공무원의 위헌. 위법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광주문제의 5원칙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명예회복,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5.18보상법은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의 취지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보상 또한 저열하고 모욕적이었던 바, 떳떳하게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전두환은 2017.4 출간한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격의 헬기사격의 흔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전두환은 거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습니다.

⑤ 1980.5.18로부터 41년의 세월. 말하자면 한 세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적어’ 지고 있습니다. 당시 관여했던 사람은 사라지고 기록으로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가에 의해 짓밟힌 피해자들의 한숨을 국가가 위로하고 아프고 어두운 역사라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4. 변호단의 구성 및 소송 내역

이에,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5.18변호단(단장 이동준)을 구성하였고, 이에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대략 당시 또는 이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분 5분, 부상자 40여명, 유죄판결자 20여명 등 70여명에 대해서 오늘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최00은 당시 공수부대에 의해 성추행과 더불어 끔찍한 가해행위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가족과 본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5.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들의 증언

6. 마치며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 의롭게 살았다는 이유로 해를 입은 분들이 매몰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 기억이 불후의 이름들을 남겨 명예로운 이는 드높이고 그렇지 못한 이는 꾸짖어 후대에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5.18 변호단

참고] 1980. 5.18 전후 사건 경과

1979년

3.19 제10대 국회 개원
10.26 박정희 사망
10.27 04시. 제주도를 제외한 비상계엄 선포,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 취임
12.6 최규하, 제10 대통령 취임
12.12 전두환 등,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불법 연행 (12.12사태)

1980년

2.18 충정부대, 후방 주요 부대 '충정훈련 ' 실시 지시
4.14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임명됨
5.15 서울지역 대학생 서울역 집회
5.17 24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활동 금지[3)]
5.18 ~27 5.18 민주화 운동
5.24 김재규외 5인 사형 집행
5.31 전두환 등 군부, 대통령 자문·보좌를 위한 임시행정기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4)] (국보위) 설치 (~10.29)
8.4 계엄포고 13호 발령(삼청교육대의 법적 근거)
8.16 최규하 대통령 下野
9.1 전두환,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8.27) 통해 11대 대통령 취임
10.27 제5공화국 헌법 공포, 시행
10.28 국가보위비상책위원회(국보위), 국가보위입법회의법 통과(~1981.4.10.)[5)].
11대 국회해산
12.18 사회보호법 제정. 시행 (법률 제3286호)

1981년

1.24 비상계엄 해제
3.3 전두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2.25) 통해 12대 대통령 취임
3.25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4.11 제11대 국회 개원

---

3)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하면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되고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하여 출입을 통제되었으므로 1980.5.18. 00:00시부터 그 기능이 정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후 9.20 정기국회 개원하여 전두환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남덕우, 감사원장 이한기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후 휴회하였다가, 1980.10.28.국가보위입법회의법 제정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위헌.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4) 전두환이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13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실세 기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5) 입법기구도 아닌 일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의해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었고, 기획과 집행의 조정 및 통제를 하기 위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에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당법, 집시법, 사회보호법, 언론기본법, 대통령선거인단법 등 각종 악법을 제정하여 5공체제의 법률적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입법기관으로서 신군부의 집권을 정당화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행한 일련의 조치들을 사후적으로 제도화, 법제화시킴으로써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임시적으로, 위헌, 위법적인 입법기관인 것입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제정하고 위 법에 근거하여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각종 5공 악법을 제정한 것입니다.